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15
----------	-------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조지연 · 박준태 · 이인선
고동진 · 배준영 · 최수진
이종욱 · 한지아 · 김장겸
김 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등의 고용 확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수

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청년 등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나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1호나목 계산식 중 “500만원”을 “5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650만원)”으로, “900만원”을 각각 “9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원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원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
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
만원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본다.

다. (생략)

2. 3. (생략)

② ~ ⑨ (생략)

----- × 500만원(수
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650만원)

B: -----

----- × 900만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50만원)

C: -----

----- × 900만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50만원)

* -----

-----.

다.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